매일유업
생산/물류 비즈니스 행동규범

Code of Business Conduct

본 비즈니스 행동규범은 생산/물류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즈니스예절/사내규정/외부법령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Maeil

Agenda

Part Ⅰ. 기본 예절 (공통사항)

1. 복장
2. 인사와 호칭
3. 방문/접대 예절 및 유의사항
4. 전화 예절 및 유의사항
5.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사용 예절 및 유의사항

Part Ⅱ. 이해관계자별 접점 시 준수사항

1. 직원(계약직/일용직)간 업무 시
2. 파트너사(위탁/납품, 도급, 설비건축, 임가공)직원과 업무 시
3. 규제기관에서 조사/점검 시

Part Ⅲ. 주요 분야별 법적 준수사항

1. 품질안전위생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2. 환경보호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3.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Part I. 기본 예절 (공통사항)

1. 복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단정하게 복장을 갖추고 매일인으로서 자부심과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상 깨끗함과 단정함이 유지되도록 하며 T.P.O (Time, Place, Occasion)를 고려한 복장을 권장합니다.

(1) 생산 복장규정

- 생산 작업자를 포함하여 생산현장을 출입하는 전 직원은 위생관리 복장규정을 따릅니다.

① 복장 착용기준

- 부서별 특성 및 작업용도, 계절에 따라 다른 유형의 위생복 착용이 가능하나, 위생적인 구조여야 합니다.
- 재질은 쉽게 찢어지지 않고 세척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 위생복, 위생화의 청결은 유지되어야 하며, 착용 후 활동이 편리해야 합니다.
- 작업자는 구역별 복장규정을 준수하고, 청결관리 상태는 위생관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구역별 복장 착용 예시]

구분	생산팀						생산-공무 제외팀		공무환경팀		외부인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일반구역		작업장, 설비 세척 작업 시		작업장 출입 시		현장/설비 정비 시		작업장 출입 시	
착용모습												
구분	위생복	O	위생복	O	위생복	O	위생복	O	위생정비복	O	위생가운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모	O
	위생화	O	위생화	O	위생장화	O	위생화	O	위생정비화	O	덧신	O
	마스크	O	마스크	(O)	마스크	(O)	마스크	(O)	마스크	(O)	마스크	(O)
	위생장갑	(O)	-	-	-	-	-	-	-	-	-	-
	기타	*포장자재 취급 시 위생장갑 착용	기타	*생산동 제외한 외곽 근무 시 회색계열의 근무복 착용	기타	*세척 작업 시 위생장화 착용	기타	*청결구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기타	*청결구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기타	*청결구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주1) ○ : 반드시 착용 / X : 미착용 / (O) : 필요 시 착용 ,
주2) 라텍스 재질 위생장갑 (청결구역), 면 재질의 목장갑 (준청결구역, 일반구역), 고무장갑(기타 설비 COP 등 세척 작업 시)
주3) 1회용 위생용품 외 기타 위생용품인 앞치마, 토시 (준청결구역 및 일반구역에서 작업의 특성에 따라 위생 및 개인 신체 보호를 위해 앞치마, 토시를 착용할 수 있으나 용품의 구역별 이동이 없어야 함)

② 올바른 착용방법

- 아래 예시와 같이 올바른 위생복과 위생용품 착용방법에 따라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착용방법 예시]

- 생산 작업자와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작업구역에 따라 적절한 위생 복장을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을 통해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 구역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탈의실, 위생전실,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위생용품은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관리합니다
- 위생복장과 위생용품의 세척 세부기준은 내부 위생관리규정(세척 및 소독기준)을 참고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구역별 지정된 위생복을 착용하며 구역의 이동 시에는 반드시 환복절차를 거쳐 구역별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물류 복장규정

① 복장 착용기준

- 창고 별(실온, 냉장) 특성과 계절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작업복의 착용은 가능하나, 위생적인 구조여야 합니다.
- 작업복, 안전화의 청결은 유지되어야 하며, 착용 후 활동이 편리해야 합니다.
- 작업자는 복장규정을 준수하고, 청결관리 상태는 위생관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복장 착용 예시]

구분	현장 근무자(상온, 냉장)		배송 SM
착용모습			
형광조끼, X밴드	O	O	O (근무복에 형광색 부착)
안전화	O	O	O
작업모	(O)	(O)	(O)
장갑(면, 코팅)	O	O	O
기타 사항	1) 배송SM은 창고 내 정해진 구역(전실 내 상차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게차와 사람이 혼재된 장소 이동금지) 2) 창고를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창고관리자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동하여야 합니다. (외부인 포함)		

O : 반드시 착용 / x : 미착용 / (O) : 필요 시 착용

② 올바른 착용방법

- 청결한 작업복을 착용하며 옷 매무새, 옷자락 등을 확고히 합니다.
- 안전화는 꽉 매어 신으며, 뒤축을 꺾어 신지 않습니다.
- 형광조끼 또는 X밴드를 정확하게 착용합니다. (지퍼, 버클 개방금지)

2. 인사와 호칭

인사를 하고 상대를 반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또한 호칭은 상호존중과 수평적인 소통을 위해 'OOO님' 호칭을 사용하며, 외부미팅 시에는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 인사를 위해 다가갈 때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인사 전에는 먼저 상대와 시선을 맞추고, 최대한 간결하게 인사합니다.
- 만약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거나 까먹었다면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등의 인사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또 뵙네요 잘 지내세요?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같은 느낌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인사한 뒤에는 상대방의 인사를 기다리며, 상대가 먼저 인사로 안부를 물었다면 대답을 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만약 하루에 여러 번 마주치는 경우에는 가볍게 목례를 하도록 합니다.
- 외부인사(파트너사, 규제기관 등)와 미팅을 할 경우, 내부직원에 대해 직급/직책 호칭이 가능합니다.
- 파트너사 직원(도급, 위탁협력, 설비건축, 임가공 등)과 공무원은 미팅 시 해당조직 내에 직급/직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호칭하며, 만약 직급/직책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OOO님'으로 호칭합니다.
- 대리점주에게는 '사장님'으로 호칭하며, 물류센터 직원(외부)에게는 '매일유업 담당자님'이라고 호칭합니다.
- 지입차량 배송기사에게 'SM(Service Master)님' 또는 '배송기사님'이라고 호칭합니다.

3. 방문/접대 예절 및 유의사항

- 모든 방문자에게 우리는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친절한 자세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 방문자를 맞이할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웅으로, 맞이하는 인사보다 더욱 정중하게 끝까지 밝은 표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경비실에서 방문자 기록은 반드시 작성하며 공장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에게는 방문자의 신원확인(신분증), 방문신청서 작성, 방문증 패용, 보안 스티커 부착(핸드폰 카메라 렌즈에 부착) 등 출입보안 절차를 준수합니다.
- 경비실에서 출입인원의 신원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공장내 담당부서 및 조직장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1) 자사공장을 방문할 경우

- 자사 임직원이 회의 목적 등으로 공장을 방문할 경우, 인솔자가 없이 업무관련 장소에 이동할 수 있으나 생산현장을 출입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동행하여 출입합니다.
- 외부인사가 미팅/납품/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회사가 허용한 장소만 출입 가능하고 그 외 장소(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는 담당자와 동행하여 출입합니다.
- 외부인사가 공사(건축/설비/유지보수) 및 Audit 등의 목적으로 생산현장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보안규정과 안전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복장, 소독지침, 위생구역 준수, 청결유지 의무 등 위생관리 프로세스를 준수한 다음 인솔자/담당자와 동행하여 생산현장을 출입합니다.
- 규제기관에서 조사/점검을 나왔을 경우, 방문목적과 신분을 확인하고 경비실에서 담당자에게 유선연락을 합니다.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경비실에서 공장장실로 안내하여 1차 접견한 뒤 내부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유관부서와 내용을 공유합니다.

(2) 파트너사를 방문했을 경우

- 사전에 파트너사에 연락하여 방문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시간 약속을 합니다.
- 약속시간은 잘 지키며, 시간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전화로 양해를 구합니다.
- 방문한 파트너사의 방문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업체 선정 또는 품질/설비 점검 등을 수행할 경우, 자사정보유출 또는 타사 정보획득에 관하여 언행에 유의합니다.
- 신속하게 업무를 마치며 업무를 마친 후,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 파트너사 방문 시, 방문목적의 결과와 세부점검 사항에 대해 상위 조직장에게 보고하고 유관부서에 공유하되, 파트너사의 중요한 정보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3) 외부인사와 식사/선물/접대 시

- 외부인사와 식사를 같이 할 경우, 비용은 1/n원칙으로 처리합니다.
- 식사접대 시,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내규정(비용위임전결-접대비)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 음주를 강요하거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취중에 밝혀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중요사항을 말하거나, 타인에 대한 도를 넘는 험담, 과도한 신체접촉, 성희롱,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선물(금액기준 5만원 이하)과 식사(인당 3만원 이하)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만약 대가성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한 경우에는 거절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거나 접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상사와 윤리경영담당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전화예절 및 유의사항

- 전화는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으며,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인사말과 함께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답변이나 상담은 명확하고 상세하며 쉽게 설명해 드리고, 반드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를 처음 받은 직원이 끝까지 안내하며,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해당업무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드린 후, 연결합니다.
- 문의사항 안내가 끝난 후 전화를 끊을 때에는 항상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 시, 상대방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담당자에 전달합니다.
- 담당자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아서 담당자가 연락 드릴 수 있도록 전하겠다고 응대합니다.
- 블랙컨슈머, 언론 및 관공서 등에서 전화가 올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담당부서의 번호를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블랙컨슈머 → CS팀, 검찰/경찰 → 법무팀, 언론 → 홍보팀)

5.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사용예절 및 유의사항

- 짧은 문장, 논리적 내용,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 메일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아주며, 가급적 첨부파일을 많이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하게 확인 체크하고 답변하도록 하며, 얼굴이 보이지 않는 수단이기 때문에 감성적 표현이나 문구에는 세심한 신경을 씁니다.
- 단체 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사용시, 본사정책 등 중요한 영업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주요 외부법령/사내규정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8조 (위생관리 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품질식품안전경영매뉴얼(SQS Manual)에 근거하여, 각 기준을 준수합니다.

- 식품보안계획(SP-FS-PR-01)
- 시설보안관리기준(SP-FS-PR-02))
- 출입보안관리기준(SR-FS-PR-03)
- 위생관리기준(SP-SS-PR-03)

▶ 취업규칙 제58조(징계의 기준)에 근거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합니다.

①-1. 관리소홀 및 업무태만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케 한 때
①-4. 회사 및 고객 등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기밀문서 등의 관리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①-9. 지위를 이용하거나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무에 관한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때
①-12.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때

▶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아래 각 조항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윤리규정 1) 우리는 직원 간에 상호존중 하겠습니다. 1)번 조항 '다양성 존중과 차별금지'
(윤리규정 2)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번 '근무기강', 3)번 조항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
(윤리규정 3)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겠습니다. 1)번 조항 '공정거래 준수' 2)번 조항 '선물과 접대수수 금지'
(윤리규정 4) 우리는 정보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1)번 조항 '내부정보 보안', 3)번 조항 '안전 및 위험예방관리'

Part Ⅱ. 이해관계자별 접점 시 준수사항

1. 직원(계약직/일용직/파견직)간 업무 시

- 근무편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특정인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무자)임을 이유로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위협, 폭력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희롱이 의심될 만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직에게 정규직 채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채용/인사 평가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2. 파트너사 (위탁/납품, 도급, 설비건축, 임가공)와 업무 시

(1) 파트너 선정/계약

- 파트너 선정 시,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과 공식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통해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트너사를 선정합니다. 학연, 지연 등 개인 친분에 의한 가점부여는 하지 않습니다.
- 특정 파트너사와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부서장에 알리고 기안을 통해 의사결정을 받고 진행합니다.
- 파트너사와 거래 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거래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 파트너사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양 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하여 사전(납품 전)에 교부해야 하며, 서류 보존기간은 3년 유지합니다.

(2) 운영관리(발주/입고/반품처리)

- 파트너사에게 긴급물량 발주, 일방적인 입고 스케줄 조정 등 파트너사에게 무리하게 요구 및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공장에 입고된 구매품은 각 공장의 구매 담당자, 창고 담당자 또는 품질 담당자 등 선정된 인원이 품목, 물량, 입고상태를 확인하고 수령증에 날인합니다.
- 공장에 입고된 구매품의 경우 입고 검사 등을 통해 적/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발생시 파트너사에게 서면발급(입고일 기준 10일 이내)하고 상호 협의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3) 파트너사와 관계관리

- 파트너사에게 정당한사유 없이 단가인하 요구를 하거나, 거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사에게 부적합한 원부자재 발생시 긴급방문 요청,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의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사 직원에게 당사의 회사시설이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사에게 자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등 경제적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사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파트너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사 직원으로부터 부정청탁, 금품, 향응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사로부터 불가피하게 선물, 경조금,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의 윤리경영취지를 설명하고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이 어려운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자진신고 한 후 윤리경영담당자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자사 및 파트너사 중요한 기술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계약종료

- 파트너사 관리기준의 Audit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계약해지 확정공문 발송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단, 연간 납품액이 해당업체 연간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또는 당사가 승인한 투자금액이 해당업체의 연간 납품액의 30% 이상 초과시, 계약 해지 확정공문일로부터 180일 이후 계약을 해지함)

3. 규제기관에서 조사/점검 시

- 규제기관에서 조사/점검 시 방문목적과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경비실에서는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합니다.
-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경비실에서 공장장실로 안내하여 1차 접견한 뒤 내부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유관부서와 내용을 공유합니다.
- 자신의 말과 행동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공손한 태도로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 감독관이나 심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며, 불필요한 언행은 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의 경우, 필요시 법무팀에 의뢰하고 내부확정한 다음 제출하도록 합니다.
- 규제기관 조사/점검 종료 후, 지적사항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보완합니다.

주요 외부법령/사내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76조의 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이하 생략)

➢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주요 외부법령/사내규정

-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0조(부당 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제19조(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외부법령/사내규정

▶ **취업규칙 제58조(징계의 기준)에 근거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합니다.**

①-5. 회사의 금품을 횡령, 배임, 절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
①-7. 사원 상호간의 단결, 인화 등을 저해할 때
①-8.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 등을 한 때
①-9.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를 취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무에 관한 증여, 향응을 받은 때
①-15.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때
①-17. 회사에 제출한 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

▶ **품질식품안전경영매뉴얼(SQS Manual)에 근거하여, 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합니다.**

- 위수탁업체관리 기준(SP-SR-PR-01)
- 협력업체관리 기준(SP-SR-PR-02)
- 규제기관 대응기준(SP-CM-PR-02)

▶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아래 각 조항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윤리규정 1) 우리는 임직원 간에 상호존중 하겠습니다. 1)번 조항 '다양성 존중과 차별 금지', 2)번 조항 '폭언 및 폭행 금지', 3)번 조항 '직장 내 성희롱 금지', 4)번 조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윤리규정2)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번 조항 '투명한 비용집행', 3)번 조항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 '4)번 조항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
(윤리규정3)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겠습니다. 1)번 조항 '공정거래 준수', 2)번 조항 '선물과 접대수수금지'
(윤리규정4) 우리는 정보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1)번 조항 '내부정보 보안'

Part III. 주요 분야별 법적 준수사항

- 모든 공식적인 업무관련 기록, 품질관련 기록 등 관련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연한동안 이를 관리합니다.
- 업무상 과실 등 적시에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허위, 은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는 보고체계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회사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유관부서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품질안전위생

(1) 개인위생 관리

- 5S 생활화(정리/정돈/청소/청결 습관화)합니다.
- 현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의 건강상태와 두발, 손톱, 손 세척/소독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합니다.
- 작업(제조공정 전체) 전, 휴식 후, 화장실 사용 후, 작업장에 재 입실 시, 작업장 구역별 이동 시 등 청결구역 내에서 작업 중 제품 외에 다른 물건을 접촉하거나 만졌을 경우 손세척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작업중 1회 이상 손세척을 실시합니다.

(2) 작업장 출입 시 유의사항

- 모든 종업원 및 외부 인원은 작업장 출입 시에는 작업장 입실절차(아래 그림)를 준수해야 합니다.
- 외부 인원의 작업장 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해당 작업장 관리부서장 또는 지원부서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당사 종업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준수사항을 따를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방문객 건강 문진표를 작성한 후 작업장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작업 출입 시, 위생복과 위생용품의 복장규격을 지키고 올바른 위생도구 착용방법에 따라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작업장 입실절차 예시]

- 세척 및 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작업장 내에서의 이동은 작업장 이동경로에 따라야 하며 특히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 해야 합니다.
- 작업 동선은 청결도가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로 이동하며, 부득이 역행 시 반드시 세척, 소독설비 및 위생전실(시설)을 통과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동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내 휴대금지 품목 예시]

- 작업에 불필요한 개인용품은 휴대하거나 반입이 금지되며, 휴대폰, 반지, 목걸이, 시계, 팔찌와 같은 개인용 장신구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 작업장에서는 제품위생에 유해한 흡연, 취식, 음용 등이 금지되므로 이와 관련된 물품은 절대 반입을 금지합니다.

(3) 작업 시 위생관리 (제조설비 위생 등)

- 생산부서 담당자는 매일 작업 전, 중, 후의 설비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설비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부적합 사항을 발생시 시정(개선)합니다.
- 약제, 소독제,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분해 청소로 세척될 수 있는 기구는 세척, 소독 시마다 분해청소 하고 CIP시스템이 적용된 시설 및 기구에 세척, 소독은 CIP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합니다.
- 작업장은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획 및 구분이 되어야 하며, 미생물의 교차오염, 기계에서 유래된 금속파편과 유해한 증기 등 물리적 화학적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합니다.
- 원부자재 및 완제품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적재, 관리합니다.

(4) 주요 외부법령 Check 사항

- 품질안전위생 관련 법령과 하위 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주요 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은 정리하였습니다.
- 품질안전위생은 식품제조 및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시설기준이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영업허가/변경 신고,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 등 서류는 적시에 제출하고 보고합니다.
-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법정교육 이수, 법적관리자(수의사, 검사원 등)의 책임사항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자기품질검사를 통해 이물 등 발견 시 지체없이 관련 관공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고 식품안전관리기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 법적 관리기준을 준수합니다.

1-1.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1/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식품 등의 취급	제3조	-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시설기준	제36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	-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5.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강진단	제40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대상자: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 시키지 못한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1군감염병, 결핵, 화농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식품위생교육	제4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 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 :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3시간

1-1.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2/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영업허가	제37조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허가·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신고증과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시 필요서류] 영업허가신청서, 교육 이수증, 수질검사성적서, 건강진단결과서 등의 필요서류, 허가사항 변경신청, 신고서 *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등록 변경사항 : 영업소의 소재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영업신고하여야 하는 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영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식품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 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제36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 시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대상 –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 유통기한, 할랄인증식품 해당여부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유통기한의 설정 사유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	- 위해식품, 병든 동물 고기,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유독기구 등 판매금지 *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등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1-1.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3/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5조 제73조	-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식품등이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 및 판매량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4.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해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수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위해 발생사실·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1개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약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검사명령 이행	제19조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에 대해 검사명령을 받을 경우 20일 이내 검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기품질검사 의무	제31조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기록서 2년간 보관) * 자가품질검사 면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조사·평가 결과가 95%이상인 경우 -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4/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이물 발견보고		-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제48조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 영업자 2시간, 종업원 16시간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 4시간 3. 그 밖에 식약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확산 우려되어 영업자·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 8시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5/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	-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일정 매출액・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1. 영유아식 제조・가공업자 2.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업자 3. 기타 식품판매업자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을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생산실적보고	제42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폐기처분 등 시설 개수명령 등 허가취소 등 품목 제조정지 등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 행정 제재처분 폐쇄조치 등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3조 제84조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 5. 위반 내용(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법령 포함)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양벌규정	제10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1/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시설기준	제21조	-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
위생관리 기준	제8조	-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	-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금지	제10조	-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진단	제29조	-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종업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거나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1군감염병, 결핵, 화농성질환
위생교육	제30조	- 영업을 하려는 자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하려는 자 : 6시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4시간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책임수의사 : 매년 4시간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 24시간) * 영업자 : 매년3시간 / 종업원 : 매년4시간
영업허가	제22조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하려면 작업장별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자의 성명(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추가 시설) -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품목제조보고	제25조	-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사항(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의 변경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2/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수입·판매 금지 등	제15조의2 제33조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사용,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판매 등이 금지된 것
위해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2	-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폐기계획을 해당관청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회수 및 폐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축산물의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생산단위(롯트)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축산물의 소비량·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회수 및 폐기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축산물의 명칭 2.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과 폐기결과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축산물의 검사	제12조	-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3/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8조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책임수의사	제13조	-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된다.
검사원	제14조	-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 검사원의 임무 1. 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 검사원의 교육이수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24시간 이상, 검사원: 매년 4시간 이상)
이물 발견보고	제31조의6	-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4/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안전관리인증 기준	제9조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인증연장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 -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3.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2. 수시 교육훈련: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는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 1회 이상 조사·평가)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제2호·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5/5)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1조의5	-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해당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약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기준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출 것 2.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축산물가공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3.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축산물가공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보관·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생산실적보고	제34조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해당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처분/부과 시설개선 압류,폐기,회수 공표 폐쇄조치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벌칙 과태료부과	제27조 제28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긴급 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약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게재사항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위반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양벌규정	제46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주요 외부법령/사내규정

▶ **품질안전위생 관련 법령과 하위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행동규범에는 주요 법령 중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법적 준수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 관련법령은 매일유업 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품질식품안전경영매뉴얼(SQS Manual)에 근거하여, 각 기준을 준수합니다.**

- 식품보안계획(SP-FS-PR-01)
- 위생관리기준(SP-SS-PR-03)
- HACCP관리 기준(SP-HA-PR-01)
- 영업장관리 기준(SP-SS-PR-01)
- 제조·가공시설·설비기준 관리 기준 (SP-SS-PR-02)
- 알러젠관리 기준(SP-SS-PR-04)
- 이물관리 기준(SP-SS-PR-05)
- 방충·방서관리 기준(SP-SS-PR-06)

▶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아래 각 조항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윤리규정 4) 우리는 정보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3)번 조항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윤리규정 6) 우리는 고객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번 조항 '고객과 품질을 위한 최우선 노력

2. 환경보호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업무 시 에너지 절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통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업무상 관련된 법령과 사내규정을 준수합니다.

(1) 업무 상황 별 준수사항

1) 수질/오염 관리 업무

- 우리 사업장은 폐수 처리 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방류수가 배출 허용기준 이내라도 대/내외적 환경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저감활동을 진행합니다.
- 폐수는 허가된 처리시스템 내에서만 운영하며, 처리시스템 외의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미준수하게 되거나 처리시스템 외 배출이 이루어질 시에는 관할 행정기관 및 회사 내 비상보고 체계를 통해서 즉시 사고 사례 전파를 진행합니다.
- 허가된 물질이외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합니다.
- 폐수처리장은 항상 청결히 관리하며, 폐수관로에서 폐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생산현장 및 폐수처리장에 불필요한 배관이 없도록 하며, 희석배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생산현장에서 처리시스템 외 오염물질 배출이 있을 시 즉시 폐수처리장과 소통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 수질 TMS는 항상 정상적인 값이 측정되도록 유지/관리합니다. (TMS : Tele Monitoring System , 수질 원격 측정기)
- 수질 TMS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으며, 고장표시 발생시에는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개선합니다.

2) 대기환경 관리 업무

- 우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대/내외적 환경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저감활동을 진행합니다.
- 불의의 사건 발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미 준수 및 비정상적인 배출이 이루어질 시 관할 행정기관 및 회사 내 비상보고 체계를 통해서 즉시 사고 사례 전파를 진행합니다.
- 대기 방지시설에 핀홀 등이 발생하여 희석배출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기적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지를 항상 확인하며, 기준을 준수합니다.

3) 소음/진동 관리 업무

- 사업장 내 근로자는 소음 다발 지역에 출입할 때는 필히 귀마개를 착용합니다.
- 설비 도입 시 소음/진동 방지용 패드를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줄어들게 합니다.
- 사업장 내에서는 가급적 경적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 사업장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주기적인 소음측정 후 원인 분석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4) 폐기물 관리 업무

- 폐기물은 우수(빗물)를 방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합니다.
- 폐기물 보관장소에서 나온 침출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관로를 구성합니다.
- 우리 회사는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도록 폐기물 발생원인, 처리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합니다.
-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유독물 관리 업무

- 유독물의 보관장소는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필요한 방제시설과 보호구를 구비합니다.
- 유독물의 누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 및 회사 내 비상보고 체계를 통해서 즉시 상황 보고합니다.
- 유독물의 오투입 및 미숙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며 화학물질명칭 TAG 및 MSDS를 현장에 비치합니다.
- 유독물이 신체에 묻었을 시는 가까운 세안시설에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 정기점검을 통해 유독물 보관장소의 부식 및 사용상의 부주의가 없는지 점검/개선합니다.

(2) 주요 외부법령 Check 사항

- 환경 관련 법령과 하위 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주요 법령인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가령,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자가측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기록과 서류는 적시에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기술인력 등의 법적교육 이수, 법적관리자(환경기술인 등)를 두고 법적 책임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문제발생 시 사실을 은폐하지 않으며, 사고 등의 발생경위는 즉시 보고하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며,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조치 합니다

2-1-1. 물환경보전법 관련 준수사항(1/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2조	-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의 설치	제35조	-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제37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	-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3.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측정기기의 부착	제38조의2	-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제39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다.
조업정지명령	제40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배출부과금	제41조	-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허가의 취소	제42조	-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4.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5.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6. 조업정지명령 및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기술인	제47조	- 사업자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개선명령	제53조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의 교육		-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68조의2	- 측정기기 비정상운영, 방치하는 경우,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2-1-1. 물환경보전법 관련 준수사항(2/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벌칙	제75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조업한 자 2. 설치 제한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벌칙	제7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7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벌칙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3.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4.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 위반
벌칙	제79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측정기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	제80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양벌규정	제81조	-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	제82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 4.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 미 신고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1-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관련 준수사항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제31조	-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설치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 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대상	제35조	[별표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 - pH, COD, SS, T-N, T-P / 부대설비(시료 채취기, Data Logger) / 적산전력계 / 적산유량계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제41조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2조	- 유기물질 - 부유물질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5조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	-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시안, 유기인,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등 19종류
환경기술인 임명 및 자격기준	제59조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자격기준 [별표17] 1종 사업장 : 수질환경기사 1명이상 2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이상 3종 사업장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경력자 1명이상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2조	-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2-1-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 준수사항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배출허용기준	제34조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 청정 : BOD 30ppm이하 / COD 30ppm이하 / SS 30ppm이하 2. 가지역 : BOD 60ppm이하 / COD 70ppm이하 / SS 60ppm이하 3. 나지역 : BOD 80ppm이하 / COD 90ppm이하 / SS 80ppm이하 -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 1. 청정 : BOD 40ppm이하 / COD 50ppm이하 / SS 40ppm이하 2. 가지역 : BOD 80ppm이하 / COD 90ppm이하 / SS 80ppm이하 3. 나지역 : BOD 120ppm이하 / COD 130ppm이하 / SS 120ppm이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49조	-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 관리사항	제64조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기술인력 교육기간.대상자	제93조	- 최초교육: 기술인력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보수교육: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2-2-1. 대기환경보존법 관련 준수사항 (1/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3조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 설치	제26조	-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제31조	-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의 기계,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측정기기 부착	제32조	-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업정지명령	제34조	-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	제36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0.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1.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제38조	-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자가측정	제39조	- 사업자는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	제40조	- 사업자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벌칙	제89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2-1. 대기환경보존법 관련 준수사항 (2/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벌칙	제90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조업한 자 2.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9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벌칙	제92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벌칙	제93조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 요청을 거부한 자
과태료	제94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오염물질 미 측정 /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 /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2.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2-2.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관련 준수사항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제11조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사업장의 분류기준	제13조	- [별표1] 사업장의 분류기준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가동개시의 대상규모	제15조	-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
배출부과금	제23조	- 기본부과금 : 황산화물, 먼지 - 초과부과금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등 9종류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제24조	-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제28조	-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농도별 부과계수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제39조	-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2-2-3.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관련 준수사항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배출허용기준	제15조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별표8] [질소산화물] - 일반보일러(기체연료)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60(4)ppm 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40(4)ppm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0(4)ppm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60(4)ppm 이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40(4)ppm 이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보존	제36조	- 1종.2종.3종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자동 전송하는 경우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보존	제36조	- 1종.2종.3종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제52조	- 1종.2종.3종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5종사업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제54조	- 준수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할 것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시료채취 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 관리사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제125조	- 위탁기관에서 교육이수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2-3-1.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1/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제8조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주변 등 지역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의 설치	제9조	-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의 준수 의무	제14조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명령	제15조	-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업정지	제16조	-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허가의 취소	제17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4.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6.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제18조	- 시.조지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	제19조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환경기술인 교육	제46조	- 환경기술인에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벌칙	제5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5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로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3-1.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1/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벌칙	제58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59조	-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과태료	제60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4.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5.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3-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준수사항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제8조	-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별표5] -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dB(A)) 1.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낮(06~18) 50이하 / 저녁(18~24) 45이하 / 밤(24~06) 40이하 2.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낮(06~18) 55이하 / 저녁(18~24) 50이하 / 밤(24~06) 45이하 3.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낮(06~18) 60이하 / 저녁(18~24) 55이하 / 밤(24~06) 50이하 4.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낮(06~18) 65이하 / 저녁(18~24) 60이하 / 밤(24~06) 55이하 5.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낮(06~18) 70이하 / 저녁(18~24) 65이하 / 밤(24~06) 60이하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제11조	-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호) -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제18조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 [별표7] 1. 총 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한 자 2. 총 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기술인 교육	제64조	-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4-1. 폐기물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정의	제2조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의 투기 금지	제8조	- 누구든지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제15조의2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의 의무	제17조	- 사업자 준수사항 1.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호를 환경부장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수탁확인서 - 지정폐기물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상호변경 2. 소재지변경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4.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벌칙	제63조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벌칙	제65조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2. 폐기물처리업의 미 허가자로 하여금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양벌규정	제67조	-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과태료	제68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2-4-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관련 준수사항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3조	-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1.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폐합성 수지, 폐합성 고무 2. 오니류 (수분함량 95% 미만이거나 고형물량이 5%이상인 것) 1) 폐수처리오니 2) 공정오니 - 부식성 폐기물 1. 폐산 (액체상태로서 pH가 2.0이하인 것) 2. 폐알카리 (액체상태로서 pH가 12.5이상인 것) -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1. 광재 2. 분진 3. 폐주물사 4. 폐내화물 5. 소각재 6. 안정화 7. 폐촉매 8. 폐흡착제 9. 폐형광등의 파쇄물 -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유(기름성분 5%이상), 폐석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폐기물의 처리기준	제7조	- 처리기준 및 방법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4.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준수사항 1) 배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출 것 2)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 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8조의4	-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제23조의2	-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 -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의 제출 -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보고서의 제출

2-4-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준수사항 (1/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제16조	-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제14조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5] - 음식물류 1.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면 시.군.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2.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임시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분업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4-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준수사항 (2/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제14조	-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 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9) 폐형광등 파쇄물은 폴리에틸렌 또는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으로 포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분업자가 보관창고 또는 보관탱크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폐기물수집.운반증 1.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2-5-1.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1/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취급자의 책무	제5조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취급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취급기준	제13조	-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춘다. - 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 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관리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개인보호구 착용	제14조	-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체 상태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23조	-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급시설의 관리기준	제24조	- 취급시설은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자체점검	제26조	-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2조	- 선임, 해임, 퇴직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제40조	-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신고	제43조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류의 기록.보존	제50조	-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벌칙	제57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60조	-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제63조	- 법 제57조부터 제62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과태료	제64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또는 기피한 자 3. 관리자의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자

2-5-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관련 준수사항 (2/2)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2조	- 관리자는 현장경력 3년 이상이고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수한자 - 직무범위 1.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개인보호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조치 5.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제13조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5-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준수사항

구분	법령	법적 준수사항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4조	- 대상은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 내용은 일반정보/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입.출고량, 보관.저장량/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정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5조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8조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별표1]
보관량 제한	제10조	- 유독물질 500kg /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kg
표시대상 및 방법	제12조	- 대상은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장소, 용기.포장[별표2]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관리기준	제21조	- 취급시설은 외벽부터 건축물의 경계까지 안전거리 유지하도록 배치 [별표5]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제23조	- 해당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제출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안전진단	제24조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취급시설 고위험도 매4년, 중위험도 매8년, 저위험도 매12년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제26조	- 점검결과는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4조	- 사고대비물질[별표9] 황산,질산,과산화수소 – 관리대장, 잠금.보안장치, 분실 시 경찰에 신고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수량기준	제45조	- 수량기준[별표10] MEK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kg이상 보관.저장 황산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00kg이상 보관.저장 질산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0kg이상 보관.저장 과산화수소 35%이상 함유한 혼합물 30,000kg이상 보간.저장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제46조	-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
화학사고 발생신고	제49조	-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등을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한다.
취급자의 실적 보고	제53조	- 매년 6월 30일까지 협회에 제출한다.
서류의 기록.보존	제56조	-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주요 외부법령/사내규정

▶ **환경보호 관련 법령과 하위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행동규범에는 [물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중심으로 중요한 법적 준수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 관련법령은 매일유업 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 수도법(환경부)
- 먹는물관리법(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환경부)
- 지하수법(환경부)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부)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법)

▶ **품질식품안전경영매뉴얼(SQS Manual)에 근거하여, 각 기준을 준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SP-HS-PR-01)
- 화학물질관리 기준(SP-HS-PR-02)
- 폐기물관리 기준(SP-HS-PR-03)
- 용수관리 기준(SP-MT-PR-03)
- 법령관리 기준(SP-OM-PR-05)

▶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아래 각 조항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윤리규정 4) 우리는 정보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3)번 조항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윤리규정 6) 우리는 고객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번 조항 '고객과 품질을 위한 최우선 노력

3. 산업안전

작업 현장에서 부상과 질병, 화재 등 기타 비상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 안전수칙, 업무규정,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작업장 내 안전과 관련된 결함 또는 문제가 발생하면 직속상사와 관련부서의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1) 기본 안전수칙

1) 업무 시작 전 준비사항

- 현장 작업시간 전 스트레칭 및 안전점검, 작업하는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 복장은 '소매단추 체결' 등 단정하게 입고 정해진 작업복과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2) 작업장 환경 내 안전 확인

- 공장 내(도로, 현장)보행 시 바닥과 통로의 안전 및 이동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 작업중 산소농도 등을 측정해야 합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 유해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안전/경고 표시 확인

- 위험지역 및 관계자 외 출입통제구역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 기계 설비 정비 시 기동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용기 등에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금속의 용접, 용단의 작업 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격리해야 합니다.
- 담배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피우고 반드시 소등하고 화재사고 예방 및 소화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 위험물 지정 장소 외에 방치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 설비의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 설비 가동 중 문제발생 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반드시 전원을 off하고 안전하게 조치합니다.
- 재해 발생시,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재해사실을 안전스텝에게 알립니다.
- 현장 재해내용 확인 후 현장관리자에게 사고조사 원인 등을 파악합니다.
- 의무실 또는 병원으로 후송한 뒤 치료상태를 확인합니다. 처리방법을 확인후 결정(입원/통원 등) 합니다

(2) 업무 상황 별 준수사항

1) 회전체 작업 시

- 방호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를 작업전에 수시로 점검합니다.
- 가동 중에는 설비의정비, 보수, 청소작업을 금지합니다.
- 정비/점검 시 작동 스위치를 Off 하거나 잠금장치를 하고 '점검 중', '사용금지' 등 표시판을 설치 후 작업합니다.
- 작업복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단정하고, 몸에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담당자 외에는 기계를 작동하거나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2) 전기작업 시

- 전기작업은 전기실 근무자 이외에는 절대 하여서는 안됩니다. 배선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전기부문 고장 발견 시 즉시 전기실(동력파트)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 젖은 손으로 전기장치를 만지지 않습니다.
- 전기활선 작업을 실시할 때 절연보호구(절연장화 등)를 필히 착용합니다.
- 모타 등 전기장치에서 스파크나 연기가 발생할 경우 전원을 즉시 차단합니다.

3) 고소작업 시

- 고소작업(2m이상) 전 관리감독자에게 사전보고 합니다.
- 혁신추진팀/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득한 후(작업허가증) 작업 진행합니다.
- 작업 전 안전작업을 위한 작업대 및 안전난간의 설치여부 확인하고, 안전모,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 모험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 합니다.
- 작업공구 및 재료 등은 공구주머니나 상자를 사용하여 작업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합니다.

4) 유독물, 위험물 취급 시

- 유독물/위험물은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담아 보관하며, 담당자 외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유독물/위험물 취급 시 반드시 보호구(보호의, 보안면, 안면마스크, 보호장갑)를 착용합니다.
- 유독물/위험물 주위에서는 화기작업을 금합니다.
- 유독물/위험물은 사용 후 반드시 마개를 닫아 놓으며, 남은 잔량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합니다.

5) 화기작업 시

- 화기작업 전 관리감독자에게 사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득한 후 진행합니다.
- 작업 전 주변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산소 및 아세틸렌 사용 후에는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합니다.
- 용접작업 시에는 반드시 용접전용 보안면을 착용하며, 용접작업 장소가 고소일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6) 전동, 지게차 작업 시

- 운전자는 전담 지게차 운전자 및 사내 운전허가자만 하여야 합니다.
- 운전 전에 브레이크 등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운전석에 있는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안되며, 전방 시야를 반드시 확보하고 운전합니다.
- 사내에서는 10km/h 이내로 서행하며, 포크는 지상에서 30m 이상 높이지 않습니다.
- 운휴 시에는 Key를 빼서 운전자가 보관하고 포크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7) 운반 작업 시

- 운반 작업 전에 스트레칭 및 체조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 과중한 물건은 직접 들지 않도록 하며, 공동으로 운반하거나 운반기구를 사용합니다.
- 운반시에는 시야가 가리지 않아야 하고, 운반 통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 사전에 확인점검 합니다.
- 높은 곳에서 팔을 뻗어 작업하는 것은 피하고,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 주의합니다.
- 물건을 들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야 하며, 물건을 든 상태에서는 몸을 옆으로 돌리지 말고 다리만 움직여 이동합니다.

(3) 주요 외부법령 Check 사항

- 산업안전 관련법령과 하위 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주요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법적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가령, 법과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기준으로 준수하고, 산업재해발생 시 기록과 보고의 의무를 다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유해/위험시설 표시 설치/부착, 보건자료 비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실시합니다.
-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법정교육 이수, 법적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 법적 책임사항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위험성 평가와 작업장 환경측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적시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합니다.
- 문제발생 시 사실을 은폐하지 않으며, 사고 등의 발생경위는 즉시 보고하고 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며,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조치 합니다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1/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의 의무	제5조제1항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의무	제10조 제2항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요지의 게시	제11조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제12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 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보건 관리자의 건의에 대한 조치
관리감독자	제14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2/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안전관리자	제15조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시행령 제12조6항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관리자	제16조	-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시행령 제 16조	-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9조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구성과 운영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3/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제20조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1조	-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조치	제23조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조치	제24조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4/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작업중지	제26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26조의 2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8조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5/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안전보건 교육	제31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 등의 교육	제32조	- 사업주(제2호는 해당 기관의 사업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유 해 위 험 기 계 기 구 안전조치	제33조	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제36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 총 15종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6/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제41조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제41조 2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작업환경측정	제42조	-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건강진단	제43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7/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벌칙	제167조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벌칙	제16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16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벌칙	제170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8/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벌칙	제17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9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	제172조	-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173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형별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74조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9/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과태료	제17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 (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10/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과태료	제175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산업안전관리법 관련 준수사항 (11/11)

구분	근거조항	법적 준수사항
과태료	제 175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주요 외부법령/사내규정

➢ **산업안전 관련 법령과 하위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행동규범에는 주요 법령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을 중심으로 법적 준수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 관련법령은 매일유업 법령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관리법(고용노동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 도시가스사업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사업부(산업통상자원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 위험물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 **품질식품안전경영매뉴얼(SQS Manual)에 근거하여, 각 기준을 준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기준(SP-HS-PR-01)
- 화학물질관리 기준(SP-HS-PR-02)
- 폐기물관리 기준 (SP-HS-PR-03)

▶ **취업규칙 제58조(징계의 기준)에 근거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합니다.**

①-1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

▶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윤리규정 4) 우리는 정보보안과 안전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3)번 조항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